
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8.

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7. 1. 김윤의원 등 38인

나. 회부일자 : 2024. 7. 2.

다. 상정 및 의결 일자 :

- 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(2024.8.20.)

상정

- 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4.8.22.)

상정

-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4.11.19.)

상정, 축조심사

- 제421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5.1.21.)

상정, 의결(대안반영 폐기)

- 제421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(2025.1.23.)

상정, 소위심사보고, 의결(대안반영 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김윤 의원)

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, 낡은 현행 「의료법」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.

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,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지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.

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, 보건의료지역들, 시민대표, 전문가가 참여하는 「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」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지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수석전문위원 : 이지민)

□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의 논의 체계를 위원회 형태로 법정화하고, 위원회 위원으로 보건의료인력단체 추천인, 노동자·시민·소비자단체 추천인, 공무원, 전문가 등 다양한 인원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, 업무 범위를 둘러싼 지역 간 이견을 좁히고 실제 의

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 갈등을 방지·해소할 수 있는 업무 범위의 구체화 논의가 한층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 다만,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의 목적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및 근무환경의 개선이라는 점, 각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내용 등을 「의료법」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구체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에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생략

5.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: 강선우)

대안을 제안하고,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.

6. 심사결과

대안을 제안하고,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.